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06

발의연월일: 2025. 5. 27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유용원 • 강선영

백종헌 • 이인선 • 김상훈

최은석 • 유상범 • 김용태

이양수 · 고동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군사기밀을 탐지 · 수집 · 누설한 자를 처벌하되,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, 요구,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 정보요 원 추정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하였고, 그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 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가성 군사기밀 거래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 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군사기밀 불법 거래의 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엄중 처벌하여 군사기밀 보 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 중 "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"를 "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의2(군사기밀 불법 거래에	제13조의2(군사기밀 불법 거래에
관한 가중처벌) ① 제11조부터	관한 가중처벌) ①
제13조까지에 따른 죄를 범한	
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, 요	
구, 약속 또는 공여한 경우 그	
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	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
<u>지 가중처벌한다</u> .	<u> 처한다</u> .